

정식재판청구취하서

사 건 2000고단 000호 00

피고인 ○ ○

위 피고인에 관하여 귀원 20○○고약 ○○○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으나,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취하합니다.

2000. 0. 0.

위 피고인 ○ ○ ○ (인)

제출기관	사건계속 법원 (형사소송법 353조)	제출기간	제1심판결선고전까지 (형사소송법 454조)
취하권자	※ 아래(1)참조	제출부수	취하서1부
피고인의 동 의	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(형사소송법 458, 351조)		
상소포기 방 식	서면으로 포기해야함. 단,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(형사소송법 458, 352조1항)		
상소포기 효 과	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(형사소송법 458, 354조)		

※ (1) 취하권자(형사소송법 458, 349조)

- 1. 검사
- 2. 피고인
- 3. 항고권자(형사소송법 349, 339조)